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8 선고 2020가단50919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

담당변호사 김성진, 추은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

담당변호사 최윤수, 장홍록

변론 종결 2021. 3. 11.

판결 선고 2021. 4. 8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. 1. 3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. 1. 3. 접수 제4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5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. 1. 3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/7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/7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. 1. 3. 접수 제4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채권

원고가 소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27600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. 7. 24. '위 C은 원고에게 18,129,504원 및 그 중 11,000,000원에 대하여 1999. 8. 23.부터 2002. 10. 4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, 위 지급명령은 2012. 8. 10. 위 C에서 송달되어 2012. 8. 25. 확정되었다. 2020. 3. 27. 기준 원고의 위 C에 대한 총 채권액은 55,707,318원이다.

나. 상속재산분할협의

(1) 위 C의 부(父) 망 D은 1975. 6. 18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주택'이라고 한다)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, 1999. 4. 2. 자신의 처인 소외 E에게 1999. 4. 1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(2) 위 E은 2000. 3. 8.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,000,000원, 채무자위 C의 처인 소외 F,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, 2003. 10. 31. 위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. 소외 H는 이 사건 주택을 50,100,000원에 경락받아 2004. 6. 15. 그

소유권을 취득하였고, 2004. 6. 16. 채권최고액56,000,000원, 채무자 H, 근저당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고한다)을 설정하였다.

(3) 위 D은 2005. 11. 30.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5. 11. 1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2005. 12. 12.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으며, 2014. 11. 13.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.

(4) 위 D이 2019. 10. 25. 사망하여 위 D의 처인 소외 E, 위 D의 아들인 위 C,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.

(5) 위 E, 위 C, 피고는 2020. 1. 3.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고 한다)를 하였고,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. 1. 3. 접수 제401호로 2019. 10. 25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가 마쳐졌다.

다. 채무자 C의 재산상태

위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갑 제3호증의 1, 2, 갑 제4호증의 1, 2, 을 제1, 3호증, 을 제4호증의 1, 2, 을 제6호증의 1, 2, 을 제16호증의 1, 2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

가. 원고

위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의 2/7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.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위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.

나. 피고

위 E, 위 C,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의 기여분을 4/5로 인정하였고, 위C의 특별수익 21,000,000원을 고려하여 위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므로,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피고는 위 C의 채무를 알지못하였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도 아니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(1)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,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(민법 제1008조),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(민법 제1008조의2 제1항),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 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

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판결 등 참조).

(2) 살피건대, 갑 제5, 6호증, 을 제8호증,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,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,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위 E, 위 C,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적어도 이 사건주택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8/15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.

(가) 피고의 처 J은 2014. 11. 13. 위 D에게 30,000,000원을 송금하였고, 위 D은 위 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사용하였다.

(나)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4. 5. 25. 위D에게 10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. 위 10,000,000원은 피고의 주장처럼 위 D이 위 C의 친구인 위 H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을 때 매각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(위 H와 위 C은 나이가 같고, 경락 이후에도 위 D이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), 설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10,000,000원은 이후 위 D이 위 H로부터 이 사건주택을 매수할 때 직,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.

(다) 2003. 11.경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격은 74,570,000원이었다.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변화 추이에 비추어 볼 때, 위 D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2005년 당시나 위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2014년 당시의 시가 도 위 감정가격과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
(3) 한편 피고는 위 C의 처인 위 F가 2000. 3. 8.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위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위 D이 아니라 위 E이었고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D이 위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, 이를 위 C의 특별수익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.

(4)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위 C의 구체적 상속분은 $2/15(= (1 - 8/15) \times 2/7)$ 라고 인정할 수 있다.

(5) 위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의 2/15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

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위 C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,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, 위 C와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(1)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.

(2) 갑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. 5. 2. 소외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20. 1. 3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나, 위 K 명의의 근저당권이 애초부터 실제 채무 없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이 사건 주택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.

(3)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위 C의 구체적 상속분인 2/15 지분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위 C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민

목록(부동산의 표시)

1. 강원도 원주시 대 195㎡

2. 강원도 원주시

[도로명주소] 원주시

목조시멘트기와지붕단층주택

53.52㎡